

#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강석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6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 의 자: 강석주 의원(1명)

찬 성 자: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신복자, 오금란,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이성배,  
이종환, 임춘대, 채수지,  
최기찬 의원(25명)

## 1. 주문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의 지원 연령 상한을 현행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 2. 제안이유

- 우리 미래 사회의 주축인 청년 세대는 최근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경변화로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함.
- 다만, 과거와 달리, 청년 세대의 고령화와 늦어진 취업, 결혼과 출산으로 청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가 30대 후반으로 늦어지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20대 후반 또는 30대 중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범위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전반적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는 사회적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특히, 위기 청년에 대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지원 연령 상한을 만 34세로 두고 있어,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미, 각 시·도에서는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조례 등을 통하여 만 39세로 확대하고 있음. 이런 여건에도 작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원 청년의 범위를 만 34세로 규정하여 일선 현장과의 괴리를 빚을 가능성을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혼선은 결국 취약계층인 위기 청년에게 돌아갈 것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법률과 일선 현장 간의 괴리를 막고 위기 청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하고자, 지원 연령 상한을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와 정부(보건복지부)에 촉구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부장관

# 위기 청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우리 미래 사회의 주축인 청년 세대는 최근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경 변화로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과거와 달리, 청년 세대의 고령화와 늦어진 취업, 결혼과 출산으로 청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가 30대 후반으로 늦어지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20대 후반 또는 30대 중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범위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전반적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023년 10월, 청년 나이 상한을 39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 바가 있다.

또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도 여전히 지원 연령 상한을 만 34세로 두고 있어,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서울시의회가 광역의회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 상위법이 제정된 결과이다. 이는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현장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미 각 시·도에 서위기 청년 지원을 조례 등을 통해 만 39세로 확대하고 있는 여건에서 제정되

있음에도 지원 청년의 범위를 만 34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내년 3월에 본격 시행될 경우, 일선 현장과의 괴리를 빚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혼선은 결국 취약 계층인 위기 청년에게 돌아갈 것으로 심히 우려가 되는 바 이다.

또한 고령화와 청년의 사회진출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생계적·심리적인 이유로 일반적인 청년에 비해 더욱 사회 진입 시기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 청년에 대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령 상한의 근거가 된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으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하므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하더라도 법률 적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법률과 일선 현장 간의 괴리를 막고 위기 청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하고자, 지원 연령 상한을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와 정부(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2025. 10.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